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4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원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3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원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에 대하여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따른 국가 시책 협조와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는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3항 및 제4항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대하여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따른 국가 시책 협조와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노동단체 지원을 통하여 취약 노동자 등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노동 관련 교육, 상담과 근로복지시설 이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인바 노동자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이 근로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제3항 및 제4항과 동일한 형태의 임의규정으로 수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을 단순 편의시설의 기능을 넘어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시설 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에 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28조제4항의 체계에 맞게 임의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근로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는 이미 법률상 존재하고, 추가적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향후 재정 여건이 변화하는 때 정책 선택의 탄력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8